

DAELIM	지침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5
	CP 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쪽번호	1 / 6

CP 장려 및 제재 조치 운영지침

DAELIM	지침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5
	CP 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쪽번호	2 / 6

목 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책임과 권한)

제 5 조 (업무절차)

제 6 조 (장려기준)

제 7 조 (제재기준)

제 8 조 (내·외부 제보자 보호)

제 9 조 (기록관리)

부 칙 (시행일)

DAELIM	지침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5
	CP 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쪽번호	3 / 6

제 1 조 (목적)

본 운영지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자율준수에 대한 장려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율준수 의지를 고취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운영지침은 업무 관련 법령 준수 또는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장려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자율준수에 관하여 회사에 공적이 있거나 또는 회사의 명예에 기여한 경우에 포상을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책임과 권한)

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보 조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업무 관련 법령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업무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업무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결과 우수 준수자에 대해서는 인사관련부서에 장려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 관련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중에서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하에 법령 위반/준수 행위 유형별 장려 및 제재기준을 수립, 시행한다.

제 5 조 (업무절차)

1. 장려조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제보 또는 모니터링 활동 및 감사 수행 시 법령 준수행위에 대하여 장려조치 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장려조치 의뢰서의 법령 준수행위 현황을 분석한 후 인사관련부서에 장려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시행(개정)일: 2021년 08월 30일

DAELIM	지침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5
	CP 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쪽번호	4 / 6

- ③ 인사관련부서는 제안된 내용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는 법령 준수행위의 모범사례를 공지하여 임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홍보한다.
2.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제보 조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 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법령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④ 법령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율준수관리자가 단독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 6 조 (장려기준)

- 1. 임직원의 법령 준수행위의 장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사전협의를 또는 제보의 결과로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공로에 기여가 큰 경우
 - ② 법령 준수행위가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③ 법령 준수행위로 회사 발전에 공적이 크거나 또는 회사 명예 제고에 기여가 큰 경우
- 2. 장려조치의 최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 7 조 (제재기준)

- 1. 법령 위반행위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회사 또는 협력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발생 또는 위법, 부당행위의 관련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준을 차등하여 반영한다.
- 2. 제재조치의 최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 8 조 (내·외부 제보자 보호)

- 1.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관련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제보자 신분 누설 및 탐문 금지
 - ① 어떠한 임직원도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율준수전담부서 등에 제보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 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보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DAELIM	지침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5
	CP 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쪽번호	5 / 6

자율준수전담 부서에 노출 경로를 조사하도록 하여 관련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보자가 보호 요청을 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직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 주관부서는 요청 받은 인사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보복 행위 금지

- ①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자율준수전담부서나 자율준수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록관리)

본 운영지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 1. 이 지침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지침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지침은 2020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지침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지침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DAELIM	지침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5
	CP 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쪽번호	6 / 6

[별표1] 장려조치 최고 기준

1. 제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구 분	포상 기준	비 고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	건당 2천만 원 한도 내	장려조치 보상 금액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행위 제보	건당 5백만 원 한도 내	
기타 행위 제보	건당 2.5백만 원 한도 내	

2. CP 운영 관련

구분	포상 기준	비 고
운영 우수부서 (CP관리 우수팀)	100만원	CP자율준수 활동 및 CP점검에 따른 사전 개선 활동 우수팀
운영 우수자 (CP활동 공로자)	20만원	CP 개선활동 등을 통하여 법률 위반행위 예방 공로 기여 및 CP 준수 행위가 현저히 우수자
제보자 (CP위반 제보자)	별표 1의 1에 따름	RISK사전 예방에 기여도가 높은 제보 건에 대하여 포상

※ 장려조치는 자율준수전담부서 및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표2] 제재조치 최저 기준

1. 법령을 위반 하거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한 자

구분	제재 기준	고려 사항
행위자	견책 이상	위반의 정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관리책임자	견책 이상	

※ 제재조치는 인사규정에서 정의한 징계양정기준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시행(개정)일: 2021년 08월 30일